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 11. 2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년 11월 1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개최(199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총무국장 金榮俊)

가. 제정이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사기진작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방범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 제20호에 서 규정한 방범수당을 월 40,000원으로 조정함.
- 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방범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 現行 地方公務員手當規程<별표9> 特殊業務手當支給區分表中 2.醫療業務等의 手當의 支給對象 및 支給方法에 있어서, 그

內容이 一部改正(대통령령 제13632호 92. 4. 25) 되고,

- 同規程 同區分表中 120防犯手當의 支給額 및 支給方法이 月 40,000원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13734호(92. 10. 1공포)로 支給額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金額”으로, 支給方法“手當의 支給方法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위 長이 定한다”로 그 內容이 一部改正되었으므로,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92. 10. 23 시달한 개정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바, 適法하다고 史料되오나,
- 다만, 附則中 “1992. 11. 1부터 適用한다.”에 대하여는 다소 論議의 餘地가 있다봅니다.

첫째, 防犯員 166名에 대한 2個月分(11. 12月) 防犯手當으로 20,200천원이 所要되는데, 이에 대한 財源確保問題
둘째, '93 豫算編成後支給할 경우 防犯手當은 防犯員에 대한 生活給的인 性格으로 防犯員의 士氣低下等 問題點이 있다고 判斷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公務員 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132
----------	-----

제출년월일: 1992. 11. 6.
제 출 자: 영 등 포 구 청 장

1. 改 正 理 由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의 사기진작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방법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 主 要 骨 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 제20호에서 규정한 방법수당을 월 40,000원으로 조정함.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방법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별표3)

3. 改 正 根 據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4. 參 考 事 項

○신, 구 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의료업무수당)을“(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방법수당) ①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3>

방법수당가산금지급구분표

자 을 방 법 원 경 력	가 산 지 급 액	비 고
1년이상 2년미만	월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	월 16,000원	
3년이상 4년미만	월 24,000원	
4년이상 5년미만	월 32,000원	
5년이상 6년미만	월 38,000원	
6년이상 7년미만	월 44,000원	
7년이상 8년미만	월 50,000원	
8년이상 9년미만	월 56,000원	
9년이상 10년미만	월 62,000원	
10년이상 11년미만	월 66,000원	
11년이상 12년미만	월 70,000원	
12년이상 13년미만	월 74,000원	
13년이상 14년미만	월 78,000원	
14년이상 15년미만	월 82,000원	
15년이상 16년미만	월 84,000원	
16년이상 17년미만	월 86,000원	
17년이상 18년미만	월 88,000원	
18년이상 19년미만	월 90,000원	
19년이상 20년미만	월 92,000원	
20년이상 21년미만	월 94,000원	
21년이상 22년미만	월 96,000원	
22년이상 23년미만	월 97,000원	
23년이상 24년미만	월 98,000원	
24년이상 25년미만	월 99,000원	
25년이상	월 100,000원	

新·舊 條 文 對 備 表

현 행	개 정(안)
<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직 공무원중 의사와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이 지급한다.</p> <p>②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신 설)</p>	<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①(현행과 같음)</p> <p>제3조(방법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p>